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. 6. 15 선고 2016가단46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5. 18.

판결 선고 2017. 6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2009. 3. 27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만 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따른 판결)

판사오세영

별지